

창원지방법원 2024. 11. 12 선고 2024가단1685 판결 [건물명도 등]

---

## 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10. 15.

판 결 선 고 2024. 11. 12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
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, ②, ③, ④,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 
22.36㎡를 인도하고,

나. 1,890,000원 및 2024. 4. 24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270,000원의  
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### 2. 인정근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홍예연

별지